

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. 12. 13 선고 2023가단51364 판결 [구상금 청구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훈진

피 고 1. B

2. C

3. D

4. E

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일

담당변호사 지관엽

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두완수

변 론 종 결 2023. 10. 11.

판 결 선 고 2023. 12. 13.

주 문

1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원고에게, 피고 B은 22,500,000원, 피고 C, D, E은 각 9,000,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피고 B, D은 2021. 1. 21. 자본금을 1,000만 원(출자 1좌: 10,000원, 자본금 총액: 1,000만 원, 출자좌수: 1,000좌)으로 한 유한회사 F(이하 ‘소외 회사’라 한다)를 설립하였는데, 당시 피고 B, D은 소외 회사의 출자좌 500좌씩을 각 보유하고 있었다.

나. 원고와 피고 B 등은 2022. 1.경 소외 회사의 자본금 총액을 1억 원으로 증액하기로 하였다. 당시 소외 회사의 출자좌는 피고 B이 250좌, 피고 C, D, E이 각 100좌, 원고의 아내 G가 450좌를 보유하고 있었는데, 원고와 피고 B 등은 위 자본금 증액에 따라 증자되는 부분을 피고들과 G가 위 출자좌 보유 비율대로 인수하기로 하였다.

다. 소외 회사는 2022. 1. 19. 자본금 총액을 1,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법인등기 변경등기를 마쳤고, 원고는 2022. 1. 24. 소외 회사의 계좌에 위 증자에 따른 대금으로 피고 C, D, E의 증자분에 대해 각 900만 원을, 피고 B의 증자분에 대해 2,250만 원을, G의 증자분에 대해 4,050만 원을 각 입금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3호증, 을 제1, 2, 10, 11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당사자의 주장 요지

가. 원고

원고는 소외 회사의 증자 당시 2022. 1. 24.경 소외 회사의 계좌로 피고들이 납입할 자본금 증액분 중 피고 B의 증자분에 대해 2,250만 원을, 피고 C, D, E의 증자분에 대해 각 900만 원을

대납하였으므로, 피고들은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피고들에 대한 위 각 증자분 대납금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들

원고가 2023. 1. 24.경 소외 회사에게 납입한 자본금 증액분은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투자금이라 할 것이므로,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피고들에 관한 각 증자분 대금 상당액을 구상할 의무가 없다.

3. 판단

살피건대, 2023. 1. 19.경 소외 회사에 관한 자본금의 총액을 증가시키면서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위 자본금 증가로 인한 피고들의 출자 전액을 납입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, 을 제2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원고와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 B 등 사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에 9,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한 후 원고가 피고들 및 G 명의의 증자로 인한 출자의 납입 형식으로 소외 회사에게 위 투자금을 지급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, 이와 같은 원고의 소외 회사의 자본금 증가로 인한 출자액 납입 경위에 비추어 볼 때,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입금한 피고들 명의의 위 출자금 상당액에 대해 구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,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,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이원호